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제에 대하여 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것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등 가전제품, 종이팩·금속캔·유리병·PET병(음식료품, 주류, 화장품, 세제류, 의약품 등) 등이 대상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관리상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것으로 살충제, 유독물용기, 화장품용기(유리병),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이 대상이다.

빈용기보증금제도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에 포함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것으로 콜라, 사이다, 2홉 소주 등 190ml 이상~400ml미만은 개당 40원, 맥주 등 400ml이상~1,000ml미만은 개당 50원이다.

분리배출표시제도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재활용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200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6조, 환경부고시 제2002-195호에 의한 것으로 종이팩·금속캔·유리병·PET병(음식료품, 주류, 화장품, 세제류, 의약품 등), 전자제품의 포장재 등이 대상이다.